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2022. 0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가 랍 (이선화)	홍천사길 49-23 (돈암제2동)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한성열)	2017.10.12. 2022.10.11.	80/69
2	꿈 의 숲 (김정남)	오패산로16가길 40 (월곡제1동)	개인위탁 (김정남)	2018.03.01. 2023.02.28.	24/23
3	돈암하늘채 (함은희)	아리랑로 75 (돈암제2동)	개인위탁 (함은희)	2018.03.01. 2023.02.28.	50/41
4	래미안숲 (최승실)	화랑로 214 (석관동)	개인위탁 (최승실)	2018.03.01. 2023.02.28.	26/26
5	삼선예일 (이선주)	보문로29다길 31 (삼선동)	개인위탁 (이선주)	2018.03.01. 2023.02.28.	24/22
6	안암래미안 (김갑숙)	고려대로17가길 64 (안암동)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김영태)	2018.03.01. 2023.02.28.	30/23
7	현 대 (한순희)	종암로21길 127 (종암동)	개인위탁 (한순희)	2018.03.01. 2023.02.28.	24/24
8	휴 먼 빌 (유연지)	아리랑로 89 (돈암제2동)	개인위탁 (유연지)	2018.03.01. 2023.02.28.	35/33
9	휴먼빌키즈 (이정오)	아리랑로 89 (돈암제2동)	개인위탁 (이정오)	2018.03.01. 2023.02.28.	20/20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0	SK키즈몬테소리 (김 영)	삼선교로16길 35 (삼선동)	개인위탁 (김 영)	2018.03.01. ~ 2023.02.28.	21/21

1) 위탁기간

- 가람어린이집 : 2022.10.12. ~ 2027.10.11.(5년)
- 꿈의숲어린이집 외 8개소 : 2023.03.01. ~ 2028.02.28.(5년)

2)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22.9월, 11월 개최 예정)

나. 변경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해피래미안 (안재열)	길음로 74 (길음제1동)	개인위탁 (안재열)	2018.03.01. ~ 2023.02.28.	30/30

1) 위탁기간 : 2023.03.01. ~ 2028.02.28.(5년)

2)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변경위탁 심의('22.11월 개최 예정)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